

#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

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
## 지원대상

근무체계 개편,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

## 지원요건

- ① 무기계약 체결
- ② 4대사회보험가입
- ③ 주 15시간 ~ 30시간 근로
- ④ 최저임금 110%(단,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은 120%) 이상 임금 지급
- ⑤ 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(월 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한)
- 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(근로시간 비례원칙)
-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,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

## 지원내용

구분	1개월 지급액	연간총액
중소·중견기업	60만원	720만원
대규모 기업	30만원	360만원

## 지원방법

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 및 승인(관할 고용센터) →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(사업주) →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검토 및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##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
- 전국 고용센터([www.work.go.kr/jobcenter](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))

